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1994. 4. 9 조례 제1356호
개정 1996. 3. 1 조례 제 8호(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2005. 10. 5 조례 제 6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0. 5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05. 10. 5>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기 준	
	직 원 수	사 업 규 모
수도사업	30인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5천 톤 이상
공업용 수도사업	20인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궤도사업	100인 이상	보유차량 50량 이상
자동차 운송사업	50인 이상	보유차량 30대 이상
가스사업	30인 이상	공급건수 1만 건 이상
지방도로사업	10인 이상	도로관리 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 · 교량 3개소 이상
하수도사업	30인 이상	1일 처리능력 1만 5천 톤 이상
청소 · 위생사업	10인 이상	1일 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 이상
주택사업	10인 이상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의료사업	20인 이상	병상수 30개 이상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0인 이상	연간 매 · 화장 2천 건 이상
주차장 사업	10인 이상	주차규모 500대 이상
토지개발 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시장사업	5인 이상	관리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관광사업	10 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 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 이용인원 10만명 이상